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501424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강현준, 장재원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주경진

변론 종결 2018. 3. 21.

판결 선고 2018. 4. 18.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31,062원 및 그 중 142,875,721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8. 23.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①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48,831,062원 및 그 중 142,875,721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21.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은 각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금원의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2016. 6. 1.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소외 E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1.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E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의하여 그 채무 등을 이행하였는바, 2016. 11. 23. 기준 원금이 142,875,721원이고, 이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액이 143,831,062원에 달한다. 한편 구상금에 따른 약정이자는 연 10%이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31,062원 및 그 중 142,875,721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부분 송달일인 2017. 8. 23.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

2.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6. 6. 1.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소외 E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1.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E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 A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였고, 2016. 11. 23. 기준 그 원금만 142,875,721원이다.

그런데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6. 8. 2. 피고 C, D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반환만이 가능한바,

따라서 피고 C, D은 피고 A과의 사이에 2016. 8. 2.자 매매계약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소하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6. 6. 1.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소외 E에 제출하였다.

그 후 A은 2016. 11.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E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의하여 피고

A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2) 한편 피고 A은 2015. 12. 3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10,000,000원, 잔금은 9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매수인인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기존의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원리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고, 피고 C이 2016. 7. 말경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 12.

30.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3호증 참조).

3) 그 후, 피고 C과 피고 A은 위 2015. 12.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등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2016. 8. 2.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을 추가하였다(이하 "2016. 8. 2.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5호증 참조).

4) 그 후 피고 C,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31. 접수 제10922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한편, 피고 C, D은 2015. 8. 29.경 피고 A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은행담보대출금 5억 3,52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7. 9. 18. 마쳐진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A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과 2013. 8. 23. 마쳐진 채권최고액 198,000,000원 채무자 A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16. 9.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 1, 3 내지 5호증, 을 제37, 38호증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한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2016. 6. 1. 체결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뒤에 거시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 C 등은 2015. 12. 30.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후 2015. 12. 30.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 내용을 정리하고 등기명의인으로 피고 D을 추가하기 위하여 2016. 8.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는 2015. 12. 30.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에는 이미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조차 발생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첫째 2015. 12. 30.자 매매계약과 2016. 8. 2.자 매매계약을 비교하여 보면,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는 내용 역시 동일하다.

둘째, 한편 2015. 12. 30.자 매매계약은 2016. 8. 2.자 매매계약에 비하여 좀 더 세세한 약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바, 그 중 2016. 8. 2.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피고 C이나 피고 A이 각자 이행할 의무 중에서 기 이행한 의무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여 2016. 8. 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6. 8. 2.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피고 C 이외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D를 매수인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 C과 피고 D이 부부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6. 8. 2.자 매매계약이 2015. 12. 30.자 매매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참조).

라.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제1차 계약이 있는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2차 계약이 있게 되면 사해행위의 판단시점을 제1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제1차 계약 이후에 권리·의무 등을 갖게 되는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제2차 계약이라는 우연적이며 형식적인 사정에 의하여 중대한 권리·의무 등의 변동이 있게 되기 때문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순건

별지